

2018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 공고

2018년도 경상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8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필기시험 과목

구 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필기시험 과목	필기시험시간	
합 계		13개 분야	628명			
공개 경쟁 채용 시험	지방소방사	소 방	남자	377명	필수(3) 국어, 한국사, 영어	100분 (5과목)
			여자	30명	선택(2)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지방소방경	법 무		2명	필기시험 면제	
	지방소방위	소방항공 (조종사)	남자	4명	필기시험 면제	
	지방소방장	소방항공 (정비사)	남자	2명		
	지방소방장	소 방 (특별조사)		5명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60분 (3과목)
	지방소방교	구급상황관리		1명		
	지방소방사	구 조	남자	37명	국어, 영어(소방활동에 필요한 생활영어 등), 소방학개론	
			남자	80명		
		구 급	여자	50명		
			운 전	남자		
		차량정비	남자	5명		
화 학				5명		
전 산				5명		
통 신			5명			

2 시험절차 및 방법

가. 시험절차(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 공개 및 경력경쟁채용시험(법무, 소방항공분야 제외)
 - 필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 면접시험
- ▣ 경력경쟁채용시험
 - 법무분야 : 신체검사 → 면접시험
 - 소방항공분야 : 실기시험 → 체력시험 → 신체검사 → 면접시험

나. 시험방법

1) 제1차 시험

가) 선택형 필기시험(법무 및 소방항공분야 제외)

- (1) 배점 및 문항 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항 4지 선택형(1문항당 1분 기준)
- (2) 출제범위

과 목	출 제 범 위
소방학개론	소방조직, 재난관리, 연소·화재이론, 소화이론 분야로 하고 분야별 세부내용은 【붙임1】 참조
소방관계법규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앞 법률들 각각의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사 회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 학	물리 I, 화학 I, 생명과학 I, 지구과학 I
수 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I

(3) 선택형 필기시험의 합격결정은 매 과목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4) 공개경쟁채용시험은 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적용합니다(「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의2 [별표7] 참조)

나) 실기시험(소방항공분야만 해당)

(1) 조종사

- (가) 시험방법 : 시뮬레이션(운항조정능력 평가)
- (나) 배 점 : 총점 100점 만점
- (다) 평가항목 : 기본비행, 소방임무형 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

(라) 실기시험의 합격결정 : 실기시험은 4개 항목(기본비행, 소방임무형 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정비사**

(가) 시험방법 : 구술실기(헬기정비 기술분야 및 기본역량)

(나) 배 점 : 총점 100점 만점

(다) 평가항목 : 기술역량, 관리역량, 임무역량

(라) 실기시험의 합격결정 : 실기시험은 3개 항목(기술역량, 관리역량, 임무역량)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5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2) 제2차 시험 : **체력시험(법무분야 제외)**

가) 시험종목 : 6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나) 배 점 : 각 종목별 10점, 총점 60점 만점 / 【붙임2】 참조

다) 측정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함

라) 체력시험의 합격결정 : 체력시험은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합니다.

마) 도핑테스트

(1) 체력시험 응시인원의 10% 이내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시합니다.

(2) 도핑테스트 시행 및 절차는 【붙임3】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합니다.

(3)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붙임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자는 금지약물, 금지방법, 응시자 본인 복용약물의 금지약물 해당여부 및 약물의 지속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도핑테스트 판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 판정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3)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가) 신체검사는 체력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정병원에서 작성한 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합니다(수수료는 응시자 개별 부담)

나)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에서 지정한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험실시기관에 제출합니다.

다) 신체검사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체조건 및 건강상태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합니다.

※ 소방항공분야(조종사)의 경우 「항공안전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신체 검사증명에 의함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람

4) 제4차 시험 : 면접시험

가) 인성 또는 적성검사, 정밀신원 조회 등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성과 자질, 능력·발전성 및 적격성을 검정합니다.

나)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 면접시험의 자료로 활용되는 **인적성검사**에 대한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3 최종합격자 결정

가. 면접시험의 합격자 중에서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및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나. 법무분야는 면접시험성적(**100%**)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다. 소방항공분야는 필기시험성적 **75%**, 체력시험성적 **15%**, 면접시험성적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결정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응시연령

구 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사	소 방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2000. 12. 31.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지방소방경	법 무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1995. 12. 31.
	지방소방위	소방항공 (조종사)	23세 이상 45세 이하	1972. 1. 1. ~ 1995. 12. 31.
	지방소방장	소방항공 (정비사)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1995. 12. 31.
		소 방 (특별조사)		
	지방소방교	구급상황관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 ~ 1998. 12. 31.
지방소방사	구조, 구급, 운전, 차량정비, 화학, 전산, 통신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 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제34조의6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4조의7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 군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2세, 2년 이상인 경우 3세

다. 신체조건

부분별	합격 기준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 각 (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조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의함

라. 거주지 제한

구 분	응 시 요 건
공 개 경 쟁 채 용 시 험	다음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자
경 력 경 쟁 채 용 시 험	거주지 제한 없음

※ 거주지 요건 확인 기준

-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마.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1) 공통 응시요건(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구분	응시요건
공개경쟁 채용시험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경력경쟁 채용시험	

※ 단, 법무분야 및 소방항공분야(조종사)는 해당 없음

2)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분야별 다음의 응시요건을 갖춘 자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1항)

※ 다만,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응시가능

분야 (계급)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법무 (지방소빙경)	「사법시험법」에 의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수료)에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법」에 의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조종사 (지방소빙위)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u>2년 이상</u> 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2,000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 총 비행시간을 말함,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②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비행경력이 있는 자 ③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 「항공안전법」 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⑤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 제1종 자격증명 소지자
정비사 (지방소빙장)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u>7년 이상</u> 인 자
특별조사 (지방소빙장)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u>2년 이상</u> 인 자 • 실무경력 인정범위 : 소방관련업체(공사업, 설계업, 소방시설관리업)에서 근무한 경력

분 야 (계 급)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구 급 상 황 관 리 (지방소방교)	<p>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직무분야의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u>3년 이상</u>으로서 당해 임용예정계급(지방소방교)에 상응하는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u>1년 이상</u>인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급상황관리 직무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업무 ②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업무 ③ 응급의료에 관한 각종 정보의 제공 및 관리업무 ④ 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 ⑤ 응급의료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실생활에 필요한 응급처치교육 ⑥ 이송업체 등 응급의료 관련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교육지원 ⑦ 대규모 재난에 따른 대량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의료정보 제공 ⑧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⑨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련 업무 ※ 임용예정계급(지방소방교)에 상응하는 경력기준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별표3]에 의함.
구 조 (지방소방사)	<p>군 특수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u>3년 이상</u>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역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있는 전역예정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여단, 특공연대,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 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회사 24특임대대, 헌병특수임무대 ※ 그 외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자는 "경력증명서 1부(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 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군·해군·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원 제출
구 급 (지방소방사)	<p>의사·간호사 면허증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다음의 기관에서 <u>2년 이상</u> ¹⁾응급의료업무 또는 ²⁾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¹⁾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 ※ ²⁾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① 소방기관 ②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체 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⑥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⑦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⑧ 군 의무부대(병적증명서와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를 함께 제출)

분야 (계급)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운전 (지방소방사)	<p>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경력 인정범위 <o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차정원 16명 이상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이상의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제외) 건설기계(3톤 미만의 지게차 제외) 특수자동차(총중량 10톤 이상인 것)
차량정비 (지방소방사)	<p>차량정비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소방차량(펌프차, 고가굴절사다리차 등), 특장차량 제조·정비업체 또는 자동차종합정비업체(자동차 정기검사 관련 업무 제외)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군 경력은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자격증 : 기능장(자동차정비), 기사(자동차정비), 산업기사(자동차정비), 기능사(자동차정비)
화학 (지방소방사)	<p>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이상 소지자로, 학사학위 취득 후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p> <p>※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응시자는 해당학교의 총(학)장으로부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붙임5】 서식)를 발급 받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p>
전산 (지방소방사)	<p>전산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자격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기사 :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실무경력 인정범위 : S/W개발부서·DB설계 및 운영부서에서 S/W개발·연구·운영, DB설계·연구·운영, 정보보안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통신 (지방소방사)	<p>통신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자격증 <o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사 : 정보통신 기능장 : 통신설비 기사 :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산업기사 :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3)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가)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www.nhic.or.kr 발급\)](http://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www.ei.go.kr 발급\)](http://www.ei.go.kr)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근무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다)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구조분야 응시자의 경우 계급별 임용일자, 근무경력(부대), 징계사항, 특수부대 교육입교 기록 등이 상세하게 기재된 **병적기록표(병무청장발급)** 또는 동 내용이 기재된 **군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가. 단계별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 령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2018. 2. 26. ~ 2. 28. (취소마감일 : 3. 7. 21:00)	3. 23. 이후	필기시험	3. 23.	4. 7.	4. 27.	
		실기 시험	소방항공 (조종사)	4월 초		4. 12. ~ 4. 13.
			소방항공 (정비사)			
		체력시험	4. 27.	5. 3. ~ 5. 11.		5. 23.
		신체검사	5. 23.	5. 28. ~ 5. 30.		6. 5.
		면접시험	6. 5.	6. 11. ~ 6. 22.		7. 5.

※ 상기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기상조건 및 시험장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시험일정.장소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의 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안내)합니다.

나. 필기시험 출제문제 문의기간 운영

- 1) 운영기간 : 2018. 4. 7.(토) 12:00 ~ 4. 10.(화) 18:00 / 4일간
- 2)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http://119gosi.kr>)
- 3) 신청절차 : 응시자는 2018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문제 문의서 **【붙임6】** 작성 첨부
- 4) 주요내용 : 필기시험 출제문제 오류, 복수정답 등 질의

※ 채용시험 문제공개 요구 또는 인터넷 신청이 아닌 전화문의는 받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응시원서는 인터넷접수만 가능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응시수수료(지방소방장 이상 7,000원, 지방소방교 이하 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제·카드 결제·계좌이체 등 비용)이 소요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접수마감일 이후 개인별 환급 예정)

다. 응시원서 사진 제출

1)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cm × 4.5cm (해상도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2) 응시원서 등록 사진은 시험 당일 본인 확인 등에 활용되므로 사진 등록 후 본인 사진 여부 및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사진식별 불능 및 등록 오류로 인하여 원서접수센터에서 사진교체 요구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연락두절 및 불응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4)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을 제출하여야 하므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2)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동일 날짜의 시험에는 중복 접수할 수 없습니다.

3)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4)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응시표 출력기간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마다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10% 또는 5%)을 가산합니다.
- 2)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이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 및 가산비율(10% 또는 5%)은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소속 지방보훈(지)청에 확인하여야 합니다(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나.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2)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채용분야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가산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8)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3)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가'항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다. 자격증 등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1)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의 경우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2조에 의한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 비율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5%를 가산합니다(**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제외**)
- 2) 자격증 등 소지자에 대한 가점비율

가점비율 분야	5%	3%	1%
자 격 증 (면허증)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술사·기능장 2. 1급 ~ 4급 향해사·기관사·운항사 3.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4. 의사, 변호사 5. 소방시설관리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기사 2. 5급 또는 6급 향해사·기관사 3.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4. 소방안전교육사	1.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중 산업기사·기능사 2. 소형선박조종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3. 대형견인차면허(舊 제1종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대형운전면허 4. 응급구조사(2급)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붙임7】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다음 중 직무분야의 기술·기능 분야 자격을 말한다.

- 건축, 건설기계운전, 기계장비설비·설치, 철도, 조선, 항공, 자동차,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정보기술, 방송·무선, 통신, 안전관리, 비파괴검사, 에너지·기상

- 3) 자격증(면허증)과 사무관리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5% 또는 3%)과 자격증(면허증)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가산점(1~5%)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면허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3) OC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및 자격증(면허증)에 한하여 가산특전을 제공합니다.
- 4) 자격증(면허증)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의사상자 증서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8 기타 유의사항

-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 모든 필기시험 문제는 중앙소방학교에 위탁출제하며, 시험문제는 비공개로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 바. 자격증(면허증) 등 응시자격 및 합격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 부정행위자(도핑테스트 비정상분석결과자 포함)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아.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무효되거나 취소됩니다.
-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 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상북도 인재개발정책관실 인재채용부서(☎ 054-880-4584) 및 경북도청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시공·감리·점검, 소방용 기계·기구의 제조·검정)
	2. 소방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구급 행정관리와 구조·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분진·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물의 류별(제1류 ~ 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질식·제거·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붙임 2】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 48.0	48.1 ~ 50.0	50.1 ~ 51.5	51.6 ~ 52.8	52.9 ~ 54.1	54.2 ~ 55.4	55.5 ~ 56.7	56.8 ~ 58.0	58.1 ~ 59.9	60.0 이상
	여	27.6 ~ 28.9	29.0 ~ 30.2	30.3 ~ 31.1	31.2 ~ 31.9	32.0 ~ 32.9	33.0 ~ 33.7	33.8 ~ 34.6	34.7 ~ 35.7	35.8 ~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 153	154 ~ 158	159 ~ 165	166 ~ 169	170 ~ 173	174 ~ 178	179 ~ 185	186 ~ 194	195 ~ 205	206 이상
	여	85 ~ 91	92 ~ 95	96 ~ 98	99 ~ 101	102 ~ 104	105 ~ 107	108 ~ 110	111 ~ 114	115 ~ 120	121 이상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 17.3	17.4 ~ 18.3	18.4 ~ 19.8	19.9 ~ 20.6	20.7 ~ 21.6	21.7 ~ 22.4	22.5 ~ 23.2	23.3 ~ 24.2	24.3 ~ 25.7	25.8 이상
	여	19.5 ~ 20.6	20.7 ~ 21.6	21.7 ~ 22.6	22.7 ~ 23.4	23.5 ~ 24.8	24.9 ~ 25.4	25.5 ~ 26.1	26.2 ~ 26.7	26.8 ~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 231	232 ~ 236	237 ~ 239	240 ~ 242	243 ~ 245	246 ~ 249	250 ~ 254	255 ~ 257	258 ~ 262	263 이상
	여	160 ~ 164	165 ~ 168	169 ~ 172	173 ~ 176	177 ~ 180	181 ~ 184	185 ~ 188	189 ~ 193	194 ~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 59	60 ~ 61	62 ~ 63	64 ~ 67	68 ~ 71	72 ~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 30	31	32 ~ 33	34 ~ 36	37 ~ 39	40	41	42	43 이상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별표4]에 의합니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붙임4】와 같습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경상북도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 결과를 통보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 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경상북도지사는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 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 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1)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드로스타논론(drostanolone)
- ▶ 메티놀론(methenolone)
- ▶ 메타스테론(methasterone)
methasterone(17 β -hydroxy-2 α ,17 α -dimethyl-5 α -androstan-3-one)
- ▶ 스타노졸롤(stanozolol)
- ▶ 1-테스토스테론(1-testosterone)
1-testosterone(17 β -hydroxy-5 α -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클렌부테롤(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hydrochlorothiazide)
- ▶ 클로로티아지드(chlorothiazide)
- ▶ 푸로세마이드(furosemide)

1) 대사물질 :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3. 흥분제 : 총 3종

- ▶ 메틸헥산아민(methylhexaneamine, dimethylpentylamine)
- ▶ 메틸에페드린(methylephedrine)
- ▶ 에페드린(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 ▶ 덱스트로모라미드(dextromoramide)
- ▶ 헤로인(diamorphine, heroin)
- ▶ 펜타닐(fentanyl) 및 유도체
- ▶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 ▶ 메타돈(methadone)
- ▶ 모르핀(morphine)
- ▶ 옥시코돈(oxycodone)
- ▶ 옥시몰폰(oxymorphone)
- ▶ 펜타조신(pentazocine)
- ▶ 페티딘(pethidine)

II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붙임 5】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학교 연락처		응시자 연락처(휴대폰)			
학 교 명		학 과 (전 공)		졸업(예정)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경상북도의 공고문에 기재된
_____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직)	성 명	(인)
	(전화)		

2018. . .

()대학교 총(학)장 (직인)

경상북도지사 귀하

【붙임 6】

2018년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문제 문의(질의)서

성 명	
연락처	• 휴대전화 : • 이 메 일 :
응시분야	• 응시지역 : • 응시분야 : 공개경쟁채용시험, 경력경쟁채용시험
질의과목	• 해당과목 : • 문항번호 : A형 - 00번, B형 - 00번
<p><출제문제></p> <p><사유 및 관련근거> - 질의사유 및 관련근거 반드시 기재</p> <p><응시자 의견></p>	

※ 경로 : 원서접수시스템 접속(<http://119gosi.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질의응답 → 필기시험 문의

【붙임 7】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분 야 (개수)	자격(면허) 종목		가점비율
건 축 (29)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5%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기사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3%
	산업기사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방수, 실내건축	1%
기능사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건설 기계 운전 (11)	기능사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舊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1%
기계 장비 설비 · 설치 (31)	기술사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5%
	기능장	건설기계정비	
	기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승강기,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3%
	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1%
기능사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생산자동화,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철도 (5)	기술사	철도차량	5%
	기능장	철도차량정비	
	기사	철도차량	3%
	산업기사	철도차량	1%
기능사	철도차량정비		
조선 (6)	기술사	조선	5%
	기사	조선	3%
	산업기사	조선	1%
	기능사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분야 (개수)	자격(면허) 종목		가점비율
항공 (8)	기술사	항공기관, 항공기체	5%
	기사	항공	3%
	산업기사	항공	1%
	기능사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 (8)	기술사	차량	5%
	기능장	자동차정비	
	기사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3%
	산업기사	자동차정비	1%
	기능사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공 (7)	기술사	화공	5%
	기사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3%
	산업기사	화약류제조	1%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3)	기능장	위험물	5%
	산업기사	위험물	1%
	기능사	위험물	
전기 (16)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5%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3%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1%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전자 (19)	기술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5%
	기능장	전자기기	
	기사	광학,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3%
	산업기사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1%
	기능사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카드	
정보 기술 (10)	기술사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5%
	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3%
	산업기사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1%
	기능사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 · 무선 (6)	기사	방송통신, 무선설비	3%
	산업기사	방송통신, 무선설비	1%
	기능사	방송통신, 무선설비	

분야 (개수)	자격(면허) 종목		가점비율
통신 (10)	기술사	정보통신	5%
	기능장	통신설비	
	기사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3%
	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1%
	기능사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안전 관리 (25)	기술사	가스,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5%
	기능장	가스	3%
	기사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산업기사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소방설비(전기분야), 화재감식평가	
	기능사	가스	1%
비파괴 검사 (15)	기술사	비파괴검사	5%
	기사	누설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3%
	산업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1%
	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기능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 · 기상 (13)	기술사	기상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5%
	기능장	에너지관리	
	기사	기상, 기상감정,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3%
	산업기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
	기능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 자격종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기술훈자력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훈자력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훈자력의 종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훈자력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면허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됨